#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75

발의연월일: 2021. 2. 10.

발 의 자: 강민국·양금희·유의동

권성동 • 한무경 • 윤창현

김영식 · 허은아 · 정동만

권명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두어 완화된 제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의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 제도 전반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하여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제공한 신용공여 규모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함 (안 제77조의3제4항 후단 신설).
- 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하도록 함(안 제249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
- 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요건을 명시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파생상품 매매 및 위험평가액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5 및 제247조의7제3항).
- 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의무부과를 배제하는 특례 규정에서 일부 조항을 제외하여 제76조제2항(환매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제2 30조제5항(비시장성 자산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설정 금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외부감사), 제247조(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감시)가 적용되도록 하고, 환매 연기가 발

생한 경우 집합투자자총회를 의무화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함(안 제249 조의8제2항 및 제249조의8제5항 단서 신설).

#### 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제공한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 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확인 의무)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 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설명서(이하"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을 미리 검증하여야 한다.
-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전문투자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부하고, 그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제2항에서 포함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로서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와 미리 합의하여 해당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한 자는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제2항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한 자는 제5항의 요구를 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집합투자업자가 제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있는 경우로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49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를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249조의7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 3. 금전차입 현황
-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9조의8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조항을 적용 한다.
- 1. 제76조제2항
- 2. 제88조.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제230조제5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제247조(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42조제1항

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제247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7조제3항 중 "제3영업일"은 "제3영업일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 그 기간"으로 본다.

제249조의8제5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237조를 적용한다.

제445조에 제25호의4부터 제25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4.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작성·제공하지 아니한 자

25의5.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5의6.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 지 아니한 자

별표 1에 제8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6의4. 제7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 우

별표 1에 제259호의5부터 제259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259의5.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작성·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259의6. 제24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서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한 경우
- 259의7.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259의8.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등에 관하여 제249조의4제5 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권유시 설명서 교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 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49 조의8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회계 연도의 말일 또는 제240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

용한다.

제4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이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49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 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 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 다. <후단 신설>

⑤ ~ ⑪ (생 략)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확인 의무)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 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_\_\_\_\_

\_\_\_\_\_\_

\_\_\_\_\_

-----. 이 경우 종합금융투 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등에 제공한 신용 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 하여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 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 ①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확인 의무)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 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②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적격투자자에 게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 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설명서 (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 다)를 작성하여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 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항 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핵심상품 설명서가 그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검 증하여야 한다.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그 전문투 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작 성하여 제공한 핵심상품설명서 를 투자자(전문투자자, 기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부하고, 그 핵심 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투자권 유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상품설명 서의 내용(제2항에서 포함하도 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중 일 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 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 한 경우로서 그 전문투자형 사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와 미리 합의하여 해당 자료를 투 자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 권유 또는 판매한 자는 그 전 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

자업자의 운용행위가 제2항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부합하지 않는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한다.

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한 자는 제5항의 요 구를 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집합투자업자가 제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 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로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 유 또는 판매하는 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 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 업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전문투자자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투자자만을 대상으

   로 할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

   체를 통할 것

   신 설>

명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투자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요

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요 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 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 다.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투자광고) ① ----

\_\_\_\_\_

\_\_\_\_\_

-----경우에는 전 문투자자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제249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 현황, 금전차입 현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생

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 우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 시하는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 자자 또는 제1항에 따른 투자 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 다.

- 제249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 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 황
  - 3. 금전차입 현황
  -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현

략)

#### <신 설>

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 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에는 다음 각 호 의 조항을 적용한다.
- 1. 제76조제2항
- 2. 제88조.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제230조제5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제247조(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4 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제247조를 이행하여야

## <u>②·③</u> (생 략)

④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u>⑤</u> ~ <u>⑧</u> (생 략)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

한다). 이 경우 제247조제3항
중 "제3영업일"은 "제3영업일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3영업
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이행
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 그 기간"으로 본다.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u>5</u>
<u>다</u>
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
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23
· 조를 적용한다.
$\underline{\widehat{0}} \sim \underline{9}$ (현행 제 $5$ 항부터 제 $8$
항까지와 같음)
145조(벌칙)

벌금에 처한다.	
1. ~ 25의3. (생 략)	1. ~ 25의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5의4.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
	<u>하여 설명서를 작성·제공하</u>
	<u>지 아니한 자</u>
<u>&lt;신 설&gt;</u>	<u>2</u> 5의5.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
	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
	<u>한 자</u>
<u>&lt;신 설&gt;</u>	<u>25</u> 의6.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
	<u>하여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u>
	<u>요구하지 아니한 자</u>
26. ~ 48. (생 략)	26. ~ 48. (현행과 같음)